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상설치구조물(SPM)의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1.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8642(2018.7.27.)호와 관련됩니다.

2.<질의요지>

- 해상에서 유조선의 원유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송유관과 연결된 해상설치구조물(SPM)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도관시설이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 나. 이에 따라 해상설치구조물인 SPM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 해당 SPM은 해상에서 원유 등을 해저 송유관으로 주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해저 송유관과 일체가 되어야만 원유수송을 위한 시설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 점, 해저 송유관과 독립하여서는 기능상 별개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해상설치구조물인 SPM은 해저 송유관과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에 따라 취득비용은 해저 송유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주무관 이준혁 서기관 홍성완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21 이화진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214 (2018.09.21.) 접수 세무과-20616 (2018.9.21.)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617 /전송 02-2100-3676 / Z99932_violetgold@mail.go.kr / 대시민공개